

## 회복적 사법 개념이 대학 상담에 주는 시사점 연구: 성희롱 상담을 중심으로

하혜숙(河惠淑)\*

### 논문 요약

최근 형사 사법에서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 개념이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에 크게 효과가 없다는 반성이 대두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재통합을 모색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개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 개념은 대학과 같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소규모 공동체의 비행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 특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대학 공동체에서 응보적 사법 개념으로 구성원의 비행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내 성희롱 문제는 성희롱 현상과 대학 문화의 특성상 응보적 사법 개념보다는 회복적 사법 개념이 보다 유용하다. 따라서 대학 내 성희롱 상담 및 조사·처리 과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회복적 사법 개념으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성희롱 상담 및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충실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 징계를 위한 과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조사·처리 과정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담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

■ 주요어 : 대학 상담, 회복적 사법, 성희롱 상담, 성희롱 조사 절차

\* 전주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기타 생활 문화가 빠르고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양성 평등에 관한 가치와 생활 문화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빠르게 진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성희롱'으로 인식되는 행태의 현상은 과거에는 개인적 문제 또는 개인 간 문제로 치부되던 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한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성희롱 현상은 구성원들(특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객관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인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쟁점화 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혁, 2005, 천대운 1999).

'바람직하지 않은 성적 언행이나 행동' 가운데 특정한 유형들이 성희롱, 성적모욕, 성적 성가심 등의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처음 마련하였으며, 일명 남녀차별금지법은 200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통합되었다. 한편 정부와 대학에서도 이러한 법령의 제정과 발맞추어 학교 교단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상담기구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a).

이와 같이 성희롱을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동부에서 2006년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전년도 대비 약 14%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2007).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은 예방교육의 강화와 함께 구성원들의 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의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처럼 예방교육을 포함한 상담 활동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대학 내 성희롱 역시 공공기관이나 직장 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법령을 제정·정비해 왔으며 정부에서도 교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 왔고 한편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여 예방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상담 활동을 벌여 왔지만, 아직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김보연, 2004; 진정희, 2003; 하혜숙, 2007). 대학의 2004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의 94.8%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참여율은 38.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b).

성희롱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같은 시기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으로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하여 대학 내 성희롱은 제도

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내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혹시 현재의 성희롱 상담 및 문제의 해결 과정이, 대학 내 성희롱을 적극적 교육이나 상담 활동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개인적 비행이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처벌의 수위를 점점 높여감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 및 비행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희롱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처벌을 통한 문제 해결의 비중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교육 기관인 대학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 상담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대학 내의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상담과 교육을 통한 자율적 해결 방법과 조사 기구를 통한 타율적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런데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미발표 집계에 의하면 대학의 성희롱 사건 접수 건수 중징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학 내의 성희롱 사건의 상당수가 상담을 통한 자율적 해결 방법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처벌을 전제로 하는 타율적인 조사 과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는 달리 대학 내 성희롱이 감소하거나 구성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형사 사법의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개념을 살펴보고, 이 개념이 대학 내 성희롱 상담 및 조사·처리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성희롱 문제

###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발전

최근 형사사법 분야에서 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복적 사법은 원래 1980년 대 이전까지만 해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형사사법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의 피해 대상을 피해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나 공동체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공동체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대응 양식들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회복적 사법은 실용주의 문화가 우세한 영미법계 국가의 형사사법의 실천적 경험의 산물로서 1974년 캐나다의 올랜드주 키치나에서 이루어졌던 가해자-피해자 화해 제도

(Victim-Offender Mediation)가 기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hsee, 1999). 이러한 새로운 비행 대처 방안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Eglash(1977)에 의해서였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었다(이순래, 2006).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비행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에 피해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죄와 비행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회복적 사법개념은, 범죄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의 결과 가해자에 대한 형벌의 양과 강도를 높여서 이를 억제하려는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이 피해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피해를 치유하고 범죄를 억제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당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재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창한, 2004).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관계적 사법(relational justice)’, ‘적극적 사법(positive justice)’, 또는 ‘재통합적 사법(reintegrative justice)’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다가 최근 회복적 사법이 일반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Carolyn & Richard, 2002).

따라서 회복적 사법 개념은 먼저 범죄와 비행을 이해하는 관점, 피해를 입은 관련자의 범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제해결 방식 등이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면 응보적 사법개념은 범죄나 비행을 가해자 개인이 국가를 포함한 공동체의 객관적 규범 질서에 도전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미 행한 과거의 행위에 대해 적당한 책임과 처벌을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가해자를 교정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개념에 의하면 형사사법 과정의 직접적 당사자는 징벌권 주체로서의 공동체와 가해자이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존재로 취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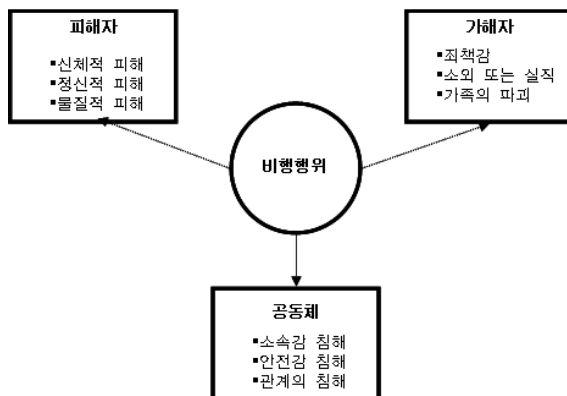
한편 회복적 사법개념은 범죄나 비행을 피해자 개인,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관계 그리고 가해자 자신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식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개념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아니라 비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문제해결의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 의하면 비행이 피해자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체 그리고 가해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관계에 해악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체계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 개인에게 응보적 관점에서 벌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관계가 입은 피해를 근원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Umbreit, 2001). 이와 같이 회복적 사법은 범죄와 비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고려하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며, 가해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관계망에 유발한 해악을 회복시킬 수 있

는 책임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

##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대학 내 성희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적 사법은 새로운 형사사법관으로서 비행에 대한 징벌이 아닌 모든 피해의 회복,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화해, 공동체의 역할 등 세 가지를 주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이순래, 2006; OJJDP: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9).

첫째, 회복적 사법은 비행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비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관련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범죄나 비행을 공동체의 당위적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체 그리고 가해자 자신에게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이해하는 비행관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문제 해결의 일차적 관심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다. 비행의 구체적 유형이나 성격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비행 행위를 통하여 공동체의 객관적 규범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공적 제재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범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비행으로 인하여 입은 공동체의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공동체가 가해자의 비행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소속감, 공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작용 관계, 안전하게 살고 싶은 구성원들의 바람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자신의 비행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느끼거나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기타 실직을 당하거나 가족 관계가 파괴 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본다.



[그림 1] 회복적 사법 관점의 피해 유형과 범위

둘째, 회복적 사법은 문제 해결 과정을 국가와 가해자의 적대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 의하면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비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대화하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의 대화는 비행의 성격이나 사건의 맥락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 대화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피해 경험과 회복 방안에 대한 솔직한 의사소통이다(Marshall, 1996).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의 솔직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피해가 근원적으로 회복되며 공동체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건강함을 회복하며 그리고 가해자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능력 회복을 하기 위하여 물질적 손해배상을 합의할 수 있으며 사과, 봉사 활동 등을 합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단을 복합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사항보다 솔직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이루는 것을 문제 해결의 본질로 여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소규모의 공동체일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화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공동체일수록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비행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측면 등에서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비행을 응보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소극적 처벌만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공동체 그리고 가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남고 공동체만 파괴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회복적 사법은 비행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처럼 공동체가 징벌권의 주체로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피해 당사자로서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 비행이 발생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과정에도 공동체가 참여하여 그 사회를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강제적인 형사사법 절차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회복적 사법은 피해의 회복, 자율적 참여와 화해, 공동체의 역할 강조 등 세 가지 주요 이념을 기초로 하여 발전해 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다양하다. 이는 회복적 사법이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제도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회복적 사법의 모형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회합모형과 조정모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실천적으로 발전해

온 구체적인 형태는 지역사회 집단회의(community conferencing), 가족집단회의(family conferencing), 분쟁해소 모임(peacemaking circles), 양형 모임(sentencing circles) 등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집단회의(conferencing), 양형 모임(sentencing circles) 등으로 알려져 있다(김용세, 2004; 이창한, 2004; 이순래, 2006). 먼저 회합 모형은 비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피해의 회복과 공동체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회합이 개최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 심정 등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참여자들의 비난과 질책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이해를 구한다. 이 때 가해자가 합의하는 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물질적 배상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사과 등과 같은 상징적 수단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회합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은 회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연락을 하고, 회합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조정모형은 조정자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조정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형태를 말한다. 많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조정자가 대면하여 의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비행의 성격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 조정자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오가며 대화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 때 조정자는 피해를 확인하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며, 앞으로 이 합의 사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희롱 문제는 관련 기구(상담소)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전문 상담자의 상담 개입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사 기구(조사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대학 내의 상담소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 기구를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조사 기구(조사위원회)는 '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조사를 거쳐 징계권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본질적인 기능은 일차적인 상담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학내외의 전문가 집단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 사이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기구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조사 기구(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조정의 과정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두 가지 접근 방식 즉 회합모형과 조정모형은 대학 내 성희롱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 대학 내 성희롱의 특징과 문제점

성희롱은 발생하는 공간적 맥락이나 행위 유형이 다양하며, 구성원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개념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들마다 성희롱을 지각하는 인식의 폭이 매우 넓다(Fitzgerald, 1996). 성희롱의 이러한 특성들은 결국 이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과 상담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 활동 그리고 학사 행정, 커뮤니티 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이며, 그 속에서 개인들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전문적 경력을 만들어 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김계현·김은경·신상숙·박정미·김보명, 2005). 그리고 교수와 학생, 학과나 실험실의 친구와 선후배, 동아리의 친구와 선후배 등 구성원의 다양한 관계망이 긴밀하고도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대학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는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 내의 성희롱은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하며 피해 후유증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Dziech & Weiner, 1990). 따라서 대학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 맥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대학 생활 및 경력 개발과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대학 생활의 장애를 지속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피해는 가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대학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관계가 파괴되어 자신의 경력 개발 과정에서 장애를 겪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 내 성희롱은 대학 공동체의 성격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때로는 성희롱 사건 당사자들의 진로 변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Stockdale, 1996). 따라서 대학 내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여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상담 방안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신상숙, 2004). 이후 2005년에 남녀차별금지법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학마다 성희롱 고충처리 관련 기구가 설치되어 대학 내의 성희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시한 '대학생 성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2003)의 결과에 의하면,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모두 언어적 유형, 비언어적 유형, 물리적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남녀의 비율로 살펴보면, 가해 경험은 남학생이 많았으며, 피해 경험은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가해 경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물리적 유형 중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26.5%, 언어적 유형이 약 20%에 이른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대학 생활과정에서 누구나 성희롱의 가해나 피해를 경험할 수 있고, 피해의 내용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의 성희롱 실태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조사(2002)에 의하면, 전체 여성 응답자 가운데 대학원 여학생의 39.4%, 학부 여학생의 39.1%, 여교수의 30.8%가 지난 1년 간 한번 이상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학 내의 전체 여성 응답자의 36.7%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대학 내의 성희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 내의 성폭력 실태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2001) 결과에 의하면, 전체 여학생 응답자의 28.3%가 직접적인 성폭력의 피해 경험이라고 응답함으로써 3명 가운데 1명꼴로 대학 내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대학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는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로 연결되는 대학 공동체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이 신고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내의 성희롱이 다른 집단의 성희롱과 달리 현실적인 맥락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진로 모색기라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나 선배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를 그냥 참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거나 심할 경우 피해 학생의 학업이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진로 및 경력을 개발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 대학 생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인생 설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Naomi, 2000). 성희롱에 대처방안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50% 이상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거나 대부분 간접적인 대응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화·고은영, 2001; 김양희, 1995; 한국여성민우회, 1993).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시한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 조사(2003)의 결과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 불쾌하지만 분위기나 관계를 고려하여 참는 경우가 39.1%,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21.4%인 반면 전문 상담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의논해 보는 경우는 0.6%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7%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가 23.8%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내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담과 같은 전문적 활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상담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 내 성희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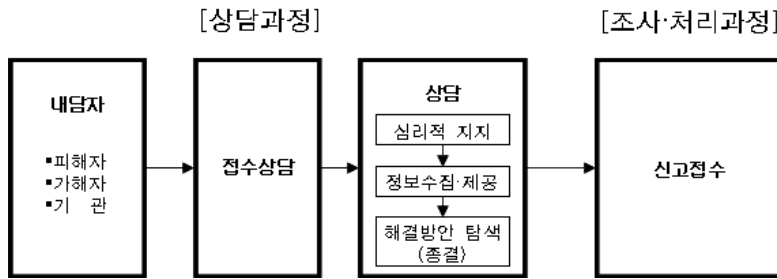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 감소하는 추세임에 비해 대학 내 성희롱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학 내의 성희롱 상담 및 문제 해결 과정이 형사사법 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본질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 논의 : 참여를 통한 피해 회복의 지향

대학은 교육과 학습, 대학 행정, 커뮤니티 생활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며, 교수와 학생, 선후배, 그리고 학과나 동아리 친구들이 유사한 희망과 가치를 공유한 채 상호작용을 하는 공동체의 하나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전문적 경력을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대학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대학 공동체의 결속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특성상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가해자의 비행을 규명하고 이를 처벌하는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처벌을 통한 가해자의 소외나 격리만 이루어질 뿐이고, 근원적인 문제 즉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대학 공동체가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 될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성희롱처럼 구성원들 사이에 객관적인 개념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않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옹호적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러한 성희롱 현상의 특성이 대학 내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현재 대학 내 성희롱 문제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크게 상담 과정과 조사·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되는 2단계 모형을 취하고 있다(하혜숙·김보명, 2005). 먼저 성희롱 상담은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학내 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신청을 접수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접수상담 과정은 내담자의 개인적 정보, 사건 및 내담자의 요구에 관한 개략적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내담자에게 상담의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접수상담을 거친 후, 성희롱에 대한 본격적인 상담 활동은 내담자에 대한 심리적 지지, 정보수집·제공, 해결방안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소통시키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모색하게 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사과와 배상 기타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성

희롱의 성격상 피해자의 요구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의 1단계 성희롱 상담 단계를 회복적 사법의 개념으로 재해석해보면, 갈등 문제(성희롱)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중간에서 상담원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양쪽의 의사를 소통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조정해 가는 조정 모형의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1단계 상담 모형은 상담원이 조정자의 입장에서 양쪽의 의사를 원활하게 소통·조정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가해자의 피해까지도 회복함으로써 모든 관련자들이 상담 과정을 통해 모두 이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 대학의 성희롱 상담 및 조사·처리 모형

그러나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대학 내 성희롱이 1단계의 [상담 과정]에서 양쪽 당사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많은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를 일반적으로 [조사·처리 과정]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조사·처리 과정은 그것의 본질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1단계 상담 과정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조사·처리 과정을 조정자(상담자)가 피해자-가해자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화해와 조정을 시도하던 1단계 상담 과정과 동일한 맥락으로 간주하여 상담 과정의 연장으로 이해한다면, 상담 과정과 조사·처리 과정의 성격과 절차가 엄밀하게 분리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2단계의 조사·처리 과정은 징벌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사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모두 모여 피해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고 대학 공동체의 통합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토의해 가는 회복적 사법 개념의 실천 과정, 즉 상담 과정의 연장이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1단계에서 종결되고, 조사·처리 과정이 가해자의 비행(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징벌 수단을 찾기 위한 조사 절차로 이해하게 되면, 상담 과정과 조사·처리 과정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물론 1단계의 상담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가 이후의 조사·처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상담 과정과 조사·처리 과정이 중복되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한쪽 당사자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경우 2단계의 조사·처리 과정은 가해자 개인의 비행에 대해 적절한 징벌을 부과하는 응보적 사법 개념의 실천 과정이 되며 상담(자)의 역할은 축소된다.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담 과정과 조사·처리 과정의 성격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실상 중복되어 있다(하혜숙·김보명, 2005). 현재와 같이 성희롱 사건 처리의 1단계와 2단계 과정의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운영될 경우, 결과적으로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2단계 조사처리 과정을 1단계 상담과정의 연속으로 간주하지 않고 처벌을 위한 조사 단계인 것처럼 운영할 경우, 대학이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도출된 정보가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 내 성희롱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징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대학 공동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회복적 사법 관점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 내 성희롱 문제의 처리 과정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사과, 피해 배상과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피해의 근본적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복적 사법 관점의 수단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형사 사법의 최근 변화 추세, 즉 공동체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성희롱 상담 및 조사·처리 과정의 핵심적 문제는 제도적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바탕으로 상담(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 내 성희롱은 응보적 사법 개념으로 처리되는 경향을 억제하고 회복적 사법 개념으로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특히, 현재 처벌을 하기 위한 단계처럼 운용되고 있는 조사·처리 과정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과 화해를 이끌어 내도록 상담 및 교육적 기능이 확장되어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현화·고은영(2001). 성차에 따른 여성의 역할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연구. 학생생활연구, 6, 65-82.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기관 성희롱 사건 발생 현황 미발표 집계.
- 교육인적자원부(2005a). 교육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5b).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10월 24일자 보도자료.
- 김계현, 김은경, 신상숙, 박정미, 김보명(2005).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정책연구. 서울: 학지사.
- 김보연(2004).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합리적인 절차. 전국 대학내성폭력 상담실무자 협의회 동계 연수 자료집.
- 김양희(1995). 성희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17-32.
- 김용세(2004).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12(2), 27-52.
- 김은경(2006).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보호, 18, 7-58.
- 노동부(200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2월 22일자 보도자료.
- 박성혁(2005).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대학사회-법과 교육사이의 갈등. 제4차 인하교육포럼 자료집, 1-11.
-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2004).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 신상숙(2004).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의 쟁점. 전국 대학내성폭력 상담실무자 협의회 동계연수 자료집, 13-30.
- 여성가족부(2002). 대학 내 성희롱 실태조사.
- 이순래(2006). 외국의 청소년비행 대응 정책 동향-미국의 OJJDP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 18, 165-194.
- 이창한(2004). 보호관찰에 있어 회복적 사법 적용가능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12(2), 53-84.
- 이호중(2004). 회복적 사법 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개편. 형사법연구, 22, 495-516.
- 진정희(2003). 성희롱 사건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천대윤(1999). 성희롱 정책: 이론과 실제. 서울: 선학사.
- 하혜숙·김보명(2005).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상담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과제 보고서.

하혜숙(2007). 남녀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효과적 상담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대학 내 성폭력 관련 정책.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1993).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Carolyn, H., & Richard, Y.(2002). *The Hand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University Press.

Dziech, B. W., & Weiner, L.(1990). *The Lecherous Professors: Sexual Harassment on Campus*(2d ed.). Urbana, IL: Univ. of Illinois.

Eglash, A.(1977). *Beyond Restitution: Creative Restitution*. In Restitution in Criminal Justice. Joe Hudson & Burt Galaway(Eds.). Lexington Mass: Heath.

Fitzgerald, L. F. (1996). *Sexual harassment: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 construct*. in M. A. Paludi(ed.), *Sexual harassment on college campus: Abusing the Ivory Power*, 2nd,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Frehsee, D.(1999). Restitution and Offender-Victim Arrangement in German Criminal Law: Development and Theoretical Implication. *Buffalo Criminal Law Review*, 3, 235.

Marshall, T.(1996). The 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4.

Naomi M. Dogan(2000). *Toward a theory of sexual harassment* : Giving voice to women students' experiences, Doctoral Dissertation (counseling psych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OJJDP(1999).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Program Summary. *Office of Justice Program*. U.S. Department of Justice.

Stockdale, M. S. (1996).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learn about sexual harassment*. I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Ed.). Thousand Oaks, CA: Sage.

Umbreit, Mark, S.(2001). *The Handbook of Victim Offender Medi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 논문접수 2007년 8월 1일 / 1차 심사 2007년 8월 14일 / 2차 심사 2007년 9월 14일
- \* 하혜숙: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주대학교 상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 및 저작물로는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상담을 중심으로", "직장 성희롱 예방 컨텐츠-성희롱 아하 그렇구나" 등이 있다.
- \* e-mail: graceha@jj.ac.kr

Abstract

## Implic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on the Counseling in Campus: Focusing on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Ha, Hye-Suk\*

Recent studies on the criminal justice shows that the traditional approach of retributive justice could not obtain desired results of preventing both criminal act itself and second offense.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has come into the spotlight as an alternative approach, which seeks to recover from the harm and pursues the social reunification of the community. In this concept, three parties participate as all concerned, who are the wrongdoer, the victim, and the community. The Restorative Justice is especially useful to cope with the wrongdoing in the small group like a university, which is composed of active interacting members. For university community, dealing the wrongdoing of a member with retributive justice could not put the issues right from the root. Moreover,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sexual harass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culture, Restorative Justice is more suitable than retributive justice in particular case of sexual harassment in university. So all the operations of the counseling, the investigating, and the problem solving should follow integrated through process in view of Restorative Justice concept, which helps sharing the merits among all concerned members who are the wrongdoer, the victim, and the community. In order to this, actual and practical method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uch that the counseling, the investigating, and the problem solving on sexual harassment in university, which must be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concept. Still there is somewhat ambiguity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ng and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f sexual harassment. The process should be reorganized as a regulating function of sharing advantages together with all concerned members of university.

Key words: Counseling in Campus, Restorative Justice,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Sexual Harassment Investigation Process

---

\* Professor, Jeonju University